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18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12월 18일  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을 이유로 일부 학교가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판단되는바, 일부 조문이 입법 취지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“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.”에서 “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”로 수정함(안 제5조제4항)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 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4항 중 “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 
아니한다.” 를 “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 
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.”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조 레 안	수 정 안
제5조(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) ① ~ ③ (생략) <u>&lt; 신 설 &gt;</u>	제5조(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<u>④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.</u>	제5조(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) ① ~ ③ (조례안과 같음)  <u>④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.</u>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마련하도록” 을 “수립 · 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 
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” 으로 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 
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 
하지 않는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책무) 교육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<u>마련하도록</u>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 <u>수립 · 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</u> ---.
제5조(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) ① ~ ③ (생략)  <u>&lt; 신 설 &gt;</u>	제5조(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④ <u>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.</u>